

약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 수시공시

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 122 조(수시공시) 및 신탁약관 제 51 조(수익자에 대한 공고등)에 따라 약관 및 투자설명서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공시합니다.

1. 투자신탁의 명칭 : BEST 장기주택마련 혼합투자신탁 1호

2. 시행일 : 2007. 8. 13.

3. 신탁약관 변경 주요 내용

◇ 변경 내용 : 환매수수료 부과기간 단축

◇ 변경 대비표

변경 전	변경 후
제 23 조(환매수수료) ①(생략) ②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 1. 1년 미만 : 이익금의 70% 2. 2년 미만 : 이익금의 50% 3. 3년 미만 : 이익금의 30%	제 23 조(환매수수료) ①(현행과 같음) ②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 1. 9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 <삭제> <삭제>
<부칙 신설>	<부칙> (시행일) 이 신탁약관은 2007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.